어르신들 키오스크 주문 '스트레스'

무인화 추세에 식당·카페 등 도입 급증…사용법 제대로 몰라 당황

광주 고령자 10명 중 6명 "불편"
창피하다가 화나고 서글픔까지
기계주문 식당 아예 안가기도
노인 디지털배움터 교육 확대해야

쉽지 않네~ 25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카페에서 이용객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70대 남성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손자를 데리고 광주 충장로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가 진땀을 뺐다. 기계 장치로 된 주문기기 사용법을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다른 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주문에 성공한 것이다.

김씨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려 오랜만에 광주 사는 아들 집 왔다가 손주 옷도 사줄 겸 시내 구경 왔는데 가는 상점마다 기계로 주문을 받더라. 노인들은 맘 놓고 아이스크림 하나 밥 한 끼 사 먹기 힘든 세상이 됐다"며 "처음엔 당황스럽고 창피하다가 이내 화가 나더니 이제는 서글프기도 하다"고 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2년 가까이 바깥 출입을 삼가던 노인들이 최근 눈에 띄게 외출을 늘리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노인들의 분노 게이지를 끌어 올리는 주범은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 형태의 무인주문 기기로 대당 가격은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상점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 국면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당과 카페가 크게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 일부에서만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설렁탕집과 동네 카페, 삼겹살집 등 웬만한 상점들이 종업원 대신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다.

청장년들은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키오스크를 가리켜 "공포이자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키오스크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광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59.9%)은 식당 기계 주문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광주지역의 경우 고령자 200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식당 기계 주문 불편함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5%, 11.0%에 그쳤다. 나머지 83.5%는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서 광주 고령자들의 식당 기계 주문 경험자 비율이 83.1%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고치(평균은 58.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 고령자들의 키오스크 스트레스는 일상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키오스크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노인들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일부는 "어차피 배워야 할 일"이라며 자녀에게 사용법을 배우고, 또 일부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이와 동반해 키오스크 설치 매장을 찾는다고 한다. 다른 노인들은 '사람이 주문받는 식당만 가는' 부류다. 식당에 가서 사람이 주문 안 받고 기계가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린다는 것이다.

광주시 등 행정당국은 노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키오스크 주문법 등 디지털 배움터 강좌를 열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광주디지털배움터(북구 호동로 6-6, 062-224-0096),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 배움터(동구 천변좌로 656, 062-234-4563) 등에선 키오스크 기계 활용법 교육이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 노인은 이러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디지털배움터 관계자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있어서 정보 격차는 고령화사회에서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유관기관은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항소심서 뒤집힌 금광기업 726억 소송

옛 사주측 상대 제기…법 "과거 채권 포기 전제 경영권 매각…지급 요구 부당"

남광토건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금광기업이 옛 금광기업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에 수백억원대 채무를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패했다. 금광기업 입장에선 1심에선 '없던 726억원'이 생겼다가 항소심 패소로 받을 돈이 다시 0원이 된 셈이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식회사 '누가개발'은 지난 2006년 4월 금광기업에 950세대 규모 군산지역 아파트 건설을 1389억원에 맡겼다. 금광기업은 2008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누가개발은 2011년 9월까지 94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48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누가개발이 금광기업에 2010년 3월까지 491억원을 빌렸다가 278억원을 갚지 않았다. 누가개발이 총 726억원의 채무를 금광기업에 졌지만, 사실상 누가개발은 금광기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신설한 법인으로 둘은 한몸이나 다름 없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금광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2010년 5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다. 회생절차 진행 중 금광기업의 경영권은 고경주씨 일가에서 봉명철씨 등이 지배하는 세운건설 측에 넘어갔다. 당시 금광기업 주식 83.26%의 양도 가격은 315억원에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고경주씨는 봉명철씨에게 찾아가 주식양도계약 부속 약정서에 "군산 아파트(누가개발)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봉씨는 이를 받아들여 수기로 적었다.

금광기업 경영권은 탈없이 바뀌었으나 수년이 흘러 금광기업이 돌연 '군산 아파트' 관련 공사대금 등 채무 726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겨났다.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됐고 1심 법원은 2020년 7월 원고인 현 금광기업 측(봉명철) 손을 들어줬다. 채권 포기·면제 의사가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데다,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근거였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25일 원심을 깼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은 과거 해당 채권을 포기·면제한다는 전제에서 옛 사주(고경주)와 주식양도계약 금액을 정하고 기업을 인수한데다, 옛 사주 지배회사로부터 담보제공을 받는 등 이익도 누렸다"면서 "그런데 수년 뒤 그 포기·면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726억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펌프카 사망 사건' 광주 첫 중대재해법 적용

펌프카 운전자 과실치사 혐의 입건

콘크리트 타설 장비(펌프카)에 맞아 30대 중국 노동자가 숨진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시공사 대표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촉발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의무위반이 확인되면 시공사인 두산건설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25일 사고를 유발한 펌프카 기사 A(5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부러지면서 지면에서 작업중인 노동자를 덮친 사고와 관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붐이 끊어진 부위에서 과거 용접했던 흔적을 발견, 부실 용접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동계가 제기한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며 관련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펌프카가 올해 1월 정기점검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건설장비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거나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아빠 찬스' 대학병원 취업 아들 임용 취소, 항소심도 "정당"

항소심 법원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대학병원에 취업한 아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함께 취업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아버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들의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규정상 아들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아들 A씨와 여자친구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전남대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교육부 특별 조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 2020년 4월 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미르. 010-8902-7900